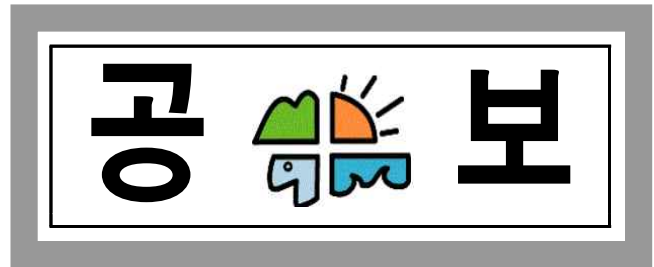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43호 2023년 2월 3일(금)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

공 고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8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10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외 2개 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14

입법예고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속초시 고시 제2023-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하나자산신탁 대표 민관식이 시행하는 속초시 동명동 436-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속초시장

1. 사업의 명칭 : 속초시 동명동 436-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사업주체 및 대표자 : (주)하나자산신탁 대표 민관식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36-1 외 118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주택	○ 대지면적 : 25,343㎡ ○ 건축연면적 : 94,229.63㎡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규 모 : 주건축물 8개동, 지하2 / 지상29층 ○ 세 대 수 : 568세대	424,547,838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20. 6. 1. ~ 2023. 2. 24.(예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 1>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45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붙임 1>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872	감) 51	26,821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72	감) 51	26,821	100.00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해당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9	동명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동명동 436-1번지 일원	26,872	감) 51	26,821	속초시고시 제2020-3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39	속초시 동명동 436-1번지 일원	26,821	◦ 준공 전 분할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오차정정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기정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3	5,699 (408)	129,078				1	294 (138)	2,752	2	5,405 (270)	126,326
대로	1	5,160 (124)	124,079							1	5,160 (124)	124,079
소로	2	539 (284)	4,999				1	294 (138)	2,752	1	245 (146)	2,247

■ 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3	5,699 (408)	129,162				1	294 (138)	2,760	2	5,405 (270)	126,402
중로	1	5,160 (124)	124,073							1	5,160 (124)	124,073
소로	2	539 (284)	5,089				1	294 (138)	2,760	1	245 (146)	2,329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	25 ~ 29.5	주간 선 도로	5,160 (124)	교동 991도	장사 517-1도	일 반 도 로		1976. 3. 27 (건고 제37호)	
변경	대로	3	4	25 ~ 29.5	주간 선 도로	5,160 (124)	교동 991도	장사 517-1도	일 반 도 로		1976. 3. 27 (건고 제37호)	
기정	소로	2	16	8 ~ 11	국지 도로	294 (138)	동명 523-1도	동명 450-3도	일 반 도 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변경	소로	2	16	8 ~ 11	국지 도로	294 (138)	동명 523-1도	동명 450-3도	일 반 도 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기정	소로	3	39	6 ~ 12	국지 도로	245 (146)	동명 523-10도	동명 450-377도	일 반 도 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변경	소로	3	39	6 ~ 12	국지 도로	245 (146)	동명 523-10도	동명 450-377도	일 반 도 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 ()는 사업부지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대로3-4	대로3-4	◦ 면적변경 (124,079m ² → 124,073m ²)	◦ 분할 및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에 따른 면적 변경
소로2-16	소로2-16	◦ 면적변경 (2,752m ² → 2,760m ²)	◦ 분할 및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에 따른 면적 변경
소로3-39	소로3-39	◦ 면적변경 (2,247m ² → 2,329m ²)	◦ 분할 및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에 따른 면적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BL1	A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36-1번지 일원	25,394	감) 51	25,343	공동주택
	B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3번지 일원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23-1번지 일원	1,478	-	1,478	공공시설
합 계			26,872	감) 51	26,821	

※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 예정 임.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A	BL1	용도	허용	◦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형 태		◦ 도면참조
		배 치		◦ 도면참조
		색 채		◦ 도면참조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6m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BL1	◦ 단지내 조경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 차량진출입허용구간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 차량진출입허용구간으로 결정된 부분 외에는 차량진출입 불허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속 초 시 장

가. 공 고 명: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나. 도로위치: 속초시 장사동 산97-1번지, 66-3번지

다. 공고방법: 속초시공보,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2023. 2. 3. ~ 2023. 2. 17. (14일간)

마. 도로 지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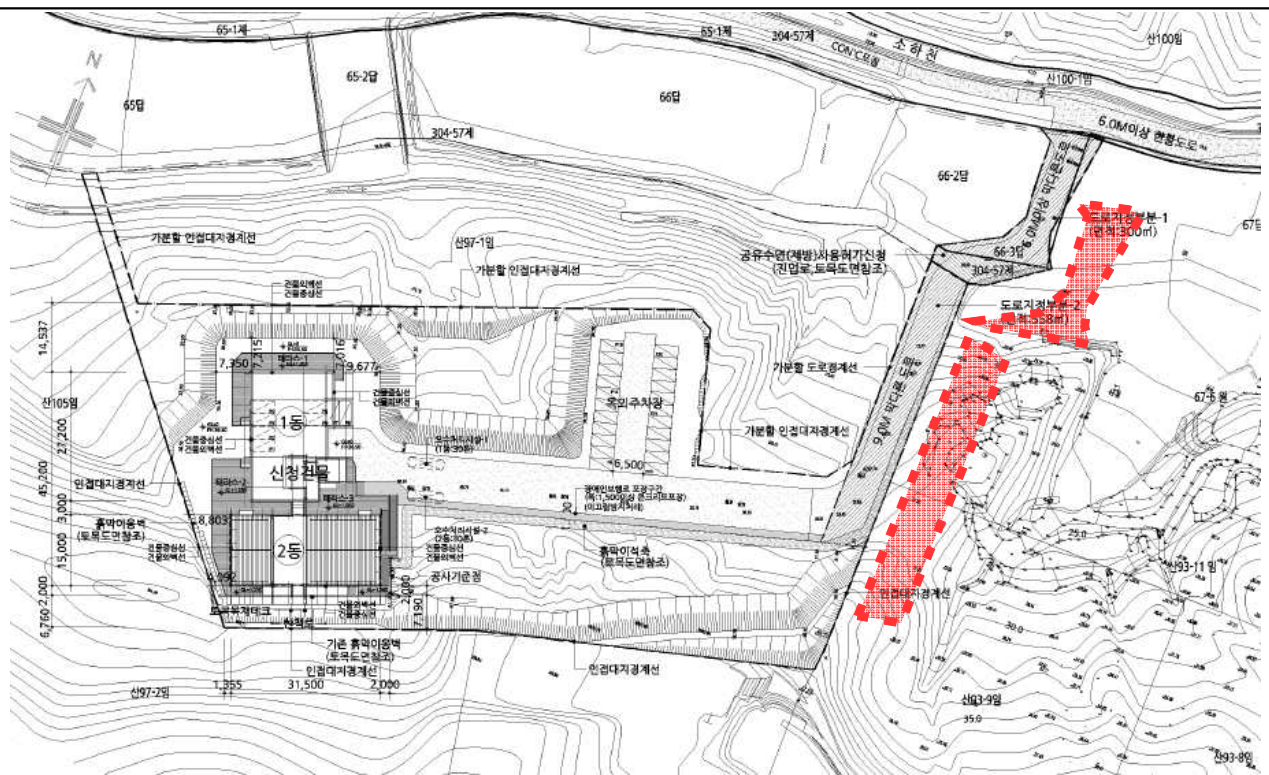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허가 통보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97-1	임	15,570	558	김민○ 김강○	장사동 산97-1 제2종근린생활시설 2023-건축과-신축허가-1 (2023. 1. 12.)	건축주: 김민○
	66-3	답	300	300	김민○		

바. 공고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사. 관계도서: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아. 문의사항: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774)

축척 NONE



축척 NONE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주)미르플래닝에서 시행하는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3일

(주)미르플래닝 대표이사 임상태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개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속초시 영랑동 131-5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25~31m, L=5,160m	B=3.75m, L=44.4m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확장

다. 사업시행자

- 성명 : (주)미르플래닝 대표이사 임상태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05동 403호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6. 30.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구분	소재지 (속초시)	지번	지목	면적(m ²)		지분	소유자 성명
				공부	편입		
토지	영랑동			63	63		

나.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라.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바. 보상금 지급 : 전액 계좌입금(현금보상)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3. 2. 3.(금) ~ 2023. 2. 17.(금)

나. 열람장소

- 속초시청 미래전략과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 033-639-3767
- 보상사무실 :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67, 4층 / ☎ 033-910-3040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토지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8-103 (1필지)

※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개별 통지문 참조

5. 기타사항

- 가. 지적 분할에 따라 지번(분할)이 부여될 예정이며,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며, 주소나 거주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는 보상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미래전략과(☎ 033-639-3767) 또는 보상사무실(☎ 033-910-30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63	63	-				
1	속초시 영랑동	148-103	도	63	63	이*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405-2*			

이 의 신 청 서

1. 토지 소재지				
2. 조사번호				
3. 이의신청인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4. 이의신청 내용				
5. 첨부서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열람하
고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은
의
의

이의신청인 : (인)

(주)미르플래닝 대표이사 임상태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지사)명	평가업자 성명	연락처

추천사유	
------	--

토지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 인	연락처	비 고
			성 명	주 소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귀사에서 시행하는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개설공사』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액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인 : (인)

주식회사 미르플래닝 대표이사 귀하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외 2개 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외 2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 열람을 실시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3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당초 : 속초시 동명동 450-405번지 외 46필지

나. 변경 : 속초시 동명동 450-405번지 외 46필지(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외 2개 노선)

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하나자산신탁(주) 대표이사 민관식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25~29.5m, L=5,160m	B=25~29.5m, L=124m	
	소로2-16호선	B=8~11m, L=294m	B=8~11m, L=138m	
	소로3-39호선	B=6~12m, L=245m	B=6~12m, L=146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6. 3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3. 2. 3. ~ 2023. 2. 17.

나. 장소 : 속초시청 미래전략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당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규모	면적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25~29.5m, L=124m	1,242㎡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2-16호선	B=8~11m, L=138m	1,594㎡	
	소로3-39호선	B=6~12m, L=146m	1,768㎡	

(변경)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규모	면적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25~29.5m, L=124m	382㎡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2-16호선	B=8~11m, L=138m	491㎡	
	소로3-39호선	B=6~12m, L=146m	752㎡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대로 3-4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5,476	1,242					기정
계				386	382					변경
1	동명동	450-405	잡	14	14	국(기획재정부)				기정
1	동명동	450-405	잡	14	14	국(기획재정부)				변경
2	동명동	450-347	대	96	13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2	동명동	450-347	대	13	13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3	동명동	450-406	잡	20	20	국(기획재정부)				기정
3	동명동	450-406	잡	20	20	국(기획재정부)				변경
4	동명동	450-342	대	162	2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4	동명동	450-451	대	29	2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5	동명동	450-341	대	109	2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5	동명동	450-450	대	22	2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6	동명동	450-338	도	87	7	국(국토교통부)				기정
6	동명동	450-449	도	7	7	국(국토교통부)				변경
7	동명동	450-404	대	26	1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7	동명동	450-452	대	12	1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동명동	450-291	대	50	22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8	동명동	450-448	대	22	22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9	동명동	450-287	대	126	55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9	동명동	450-447	대	55	55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0	동명동	450-284	도	202	10	국(국토교통부)				기정
10	동명동	450-445	도	10	10	국(국토교통부)				변경
11	동명동	450-286	대	18	5	국(국토교통부)				기정
11	동명동	450-446	대	5	5	국(국토교통부)				변경
12	동명동	450-3	도	4,338	986	국(국토교통부)				기정
12	동명동	450-453	도	52	52	국(국토교통부)				변경
13	동명동	450-454	도	74	74	국(국토교통부)				변경
13	동명동	450-227	대	112	31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4	동명동	450-444	대	31	31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4	동명동	450-225	도	116	16	국(국토교통부)				기정
15	동명동	450-443	도	20	16	국(국토교통부)				변경

■ 토지조서(소로2-16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4,363	1,594					기정
계				491	491					변경
1	동명동	429	대	307	6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	동명동	429-2	대	69	6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2	동명동	545-1	대	285	8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2	동명동	545-7	대	82	8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3	동명동	523-1	도	2,104	1,103	속초시				기정
3	동명동	523-1	도	-	-	속초시				변경
4	동명동	545-3	대	251	16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4	동명동	545-3	대	16	16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5	동명동	523-12	도	190	189	속초시				기정
5	동명동	523-12	도	189	189	속초시				변경
6	동명동	544-6	대	162	2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6	동명동	544-8	대	20	2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7	동명동	544-1	대	195	2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7	동명동	544-7	대	21	2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8	동명동	525-2	대	202	3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8	동명동	525-13	대	39	3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9	동명동	525-1	대	512	35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9	동명동	525-12	대	35	35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0	동명동	525-10	대	155	2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0	동명동	525-14	대	20	2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 토지조서(소로3-39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4,213	1,768					기정
계				789	752					변경
1	동명동	450-358	대	43	4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	동명동	450-358	대	42	4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2	동명동	450-349	대	168	53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2	동명동	450-349	대	53	53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3	동명동	450-398	대	39	1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3	동명동	450-398	대	10	1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4	동명동	450-345	대	88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4	동명동	450-345	대	1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5	동명동	450-379	대	1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5	동명동	450-379	대	1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6	동명동	529-8	도	35	33	속초시				기정
6	동명동	529-8	도	33	33	속초시				변경
7	동명동	437-5	대	328	36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7	동명동	437-5	대	36	36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8	동명동	529-14	도	2	2	속초시				기정
8	동명동	529-14	도	2	2	속초시				변경
9	동명동	437-13	대	1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9	동명동	437-13	대	1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0	동명동	437-12	잡	2	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0	동명동	437-12	잡	2	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1	동명동	437-2	잡	243	5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1	동명동	437-2	잡	50	5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2	동명동	437-3	창고	555	12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2	동명동	437-3	창고	129	12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3	동명동	531-2	도	1,401	1,022	속초시				기정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	동명동	531-2	도	-	-	속초시				변경
14	동명동	437-6	대	250	6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4	동명동	437-6	대	62	6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5	동명동	437-4	대	269	65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5	동명동	437-4	대	65	65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6	동명동	535-4	대	278	77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6	동명동	535-4	대	77	77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7	동명동	535	대	350	87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7	동명동	535	대	87	87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8	동명동	529-1	도	33	8	속초시				기정
18	동명동	529-1	도	8	8	속초시				변경
19	동명동	531-3	전	12	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9	동명동	531-3	전	9	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20	동명동	530-71	대	9	9	시티글로벌㈜	속초시 번영로 170, 2001호			기정
20	동명동	530-71	대	9	9	시티글로벌㈜	속초시 조양로 98, 2층(조양동)			변경
21	동명동	524-18	도	13	13	속초시				기정
21	동명동	524-18	도	13	13	속초시				변경
22	동명동	530-79	대	50	50	시티글로벌㈜	속초시 번영로 170, 2001호			기정
22	동명동	530-79	대	50	50	시티글로벌㈜	속초시 조양로 98, 2층(조양동)			변경
23	동명동	530-69	대	43	6	속초시				기정
23	동명동	530-69	대	43	6	속초시				변경
24	-	-	-	-	-	-	-			기정
24	동명동	530-80	대	6	6	시티글로벌㈜	속초시 조양로 98, 2층(조양동)			변경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우리 시 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미래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관광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관광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안 제3조)
- 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
- 라.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념품 제공 대상 확대(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관광과
- 연 락 처: 033-639-2365(FAX 033-639-2384)
- 전자메일: qkrcksal@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기획팀(033-639-2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관광객유치”를 “지속가능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속초시”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관광여건 조성, 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관광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수지 확대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안내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강원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지원”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2.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한 여행사
4. 시에서 추진하는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5. 시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를 실시하는 경우
6. 시의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사진, 영상, 기념품 등 관광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7.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중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현금, 지역화폐 및 지역특산품 등의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중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방법,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중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6조(중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박람회·팸투어 등 참석자
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 및 초청자

3. 관광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매체 관계자
4. 관광홈페이지 및 SNS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5. 시장(업무를 위탁·보조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 참가자 <중전의 제2호에서 이동>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앞의 “제3장 속초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앞의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을 삭제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이”를 “관광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5조제4항 관련)

1. 수학여행학교

인원기준	보 상 금	
	1박	2박 이상
학교당 20인 이상	1인당 5,000원	1인당 7,000원

2.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원기준	보 상 금
20인 이상 40인 이하인 경우	1숙박당 200,000원
41인 이상 80인 이하인 경우	1숙박당 400,000원
81인 이상인 경우	1숙박당 600,000원

※ 비고 사항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라 단체관광객 인원모집이 어려울 경우, 인원기준을 50% 완화하여 적용(재난종료 시까지 한시적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장 총칙</u>	<u><삭 제></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관광객유치</u>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속가능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u>속초시</u> 여행을 말한다.	4 ----- ----- ----- ----- <u>속초시(이하 “시”라 한다.)</u>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u>“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u>
<u><신 설></u>	<u>제3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 등)</u>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관광여건 조성, 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관광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관광여건 및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수지 확대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안내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

제3조 (생 략)

<신 설>

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2.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한 여행사

4. 시에서 추진하는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5. 시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
투어를 실시하는 경우

6. 시의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사진, 영상, 기념품 등
관광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

7.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
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지
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
원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
여 각종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

을 개최하고 현금, 지역화폐 및 지역특산품 등의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방법,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2장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

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속초시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속초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한 여행사.

<삭 제>

4.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관광
택시 사업 참여자

5.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
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
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방법,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제외) 수학여행학교
및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략)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시장(업무를 위탁·보조받
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
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

제6조(지원 제외) -----

----- 제

5조-----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1. 국내·외 관광설명회·박람
회·팸투어 등 참석자

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
및 초청자

로그랩 참가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장 속초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11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
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
여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3. 관광홍보를 위한 방송, 인
쇄물, 인터넷 매체 관계자

4. 관광홈페이지 및 SNS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
가자

5. 시장(업무를 위탁·보조받
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
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
로그램 참가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삭 제>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12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수 있다. 1. ~ 4. (생 략) <u>5.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관광사진 공모사업</u> <u>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12조 ~ 제14조 (생 략)</u> <u><신 설></u>	1. ~ 4. (현행과 같음) <u>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삭 제> <u>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u> <u>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u>
--	--